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53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2
2. 부칙	11
IV. 입법의 재정영향	13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벌칙) ① -----제53조-----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	제1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²⁾

- 근로조건 명시 의무위반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³⁾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개정안은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상 근로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벌칙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행법은 부당 해고, 강제근로, 임금 체불 등 선원의 인권과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2) 「선원법」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지 등 「법령입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반면, 선원명부 공인 미비, 선내 불만 처리 절차 게시 의무 위반, 임금 대장 기록 미비 등 절차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선원법」 상 제재 규정4)>

제재 종류	행위
징역·벌금	-부당 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67조제1호,제2호) -강제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67조제3호) -임금 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68조제1호의2)
과태료	-선원명부 공인 미비: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9조제3항제6호) -선내 불만 처리 절차 게시 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9조제3항제16호) -임금 대장 기록 미비: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9조제4항제1호)

이러한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을 행정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최근 5년간 법 제27조제1항 위반 건수가 0건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제재의 억지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정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4) [참고 2] 참조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벌칙의 존재로 인해 법 위반이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태료 전환 후 제재 완화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점검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근로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록 「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⁶⁾에 따라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이 근로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114조⁷⁾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

5)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해당 조항의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 취업 장소나 종사 업무 등 ‘단순 명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음.⁸⁾

「선원법」은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제27조)와 별도로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제43조⁹⁾)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를 위반하여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 관계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2025. 9. 30.

9) 「선원법」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11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구두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개정 방향이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과 맞는 것으로 보임.

다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제17조를 벌칙 사항과 과태료 사항으로 분리하는 등 조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6년 3월 현재 해당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의 개정 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2025.11.27., 2022헌바154).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조항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가 불리하거나 부당한 근로를 강요당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오늘날

-
- 5. 임금에 관한 사항
 - 6.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 7.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 8.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 9.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 10.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11.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노동현실에서도 여전히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사용자에게 심리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음.

- 관련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벌칙의 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타법(「근로기준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도 과태료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점과 과태료로도 선원의 권리보호라는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벌금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은 종전 벌금형의 상한액과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종전 벌금형의 상한 1천만원에 준하여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은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과건을 할 때에 미

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호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¹⁾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제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²⁾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³⁾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2)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4)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⁵⁾

문 의 처
02)6788-5427

15)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겸직금지 등

참고 2

「선원법」 상 제재규정

1. 부당해고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강제근로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 임금 체불

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4. 선원명부 공인 미비

제17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에 적지 아니하거나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선원명부에 교대 관련 사항을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갈음하여 적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 중 항해구역이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인터넷을 통한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자신을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5. 선내 불만 처리 절차 게시 의무 위반

제17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중략)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6. 임금 대장 기록 미비

제179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제58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